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 제1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전환기 배구 및 배드민턴 대회 운영
-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 다.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 12. 18.(금)까지
- 라. 소요예산 : 금54,000,000원(금오천사백만원) / VAT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같음

4. 입찰일정

- 가. 입찰 공고 : 2026. 8. 24.(월) ~ 9. 4.(금)
-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 2026. 9. 4.(월) 10:00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제출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제출 입찰서, 제안서, 가격제안서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 무효
- 다. 기술능력 평가(P/T) : 제안서 마감 이후 개별연락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세부일정과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 라.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 추후 통보

5. 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6.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 : 업체별 심사 및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 이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 90%+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제안서의 효력

- 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귀속됨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등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같음합니다.
-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08.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회